##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43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윤상현·김선교·이헌승

성일종・안철수・김 건

김석기 · 주호영 · 김종양

박정훈 · 송석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이를 계기로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적을"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에게"를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에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간첩) ① <u>적을</u> 위하여 간	제13조(간첩) ① 외국과 국내외
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	
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다.	<b>.</b>
② 군사상 기밀을 <u>적에게</u> 누설	②외국과 국내외 단체
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	및 비국가행위자에게
다.	<b>.</b>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